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 안 번 호	1536
------------------	------

제출일자 : 2018. 4.

제출자 : 달성군수



## 1. 의결주문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 2. 제안이유

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부터 안 제2조)
- 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부터 안 제9조)
- 다.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관한 사항(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
- 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13조부터 안 제16조)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청소년기본법」 제3조, 「청소년기본법시행령」 제2조
-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필요 없음
- 다. 기타사항
  - (1) 성별영향평가 : 개선 동의
  - (3) 부패영향평가 : 개선 동의
  - (4) 규제심사 : 원안 동의

(5)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 2018. 3. 5.(월) ~ 2018. 3. 25.(일)

(나) 예고결과 : 의견 없음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에 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3.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청소년을 발견·구조·치료하는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4. “필수연계기관”이란 위기청소년을 발견·지원·보호하기 위해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에 필수적 구성원이 되는 공공 기관을 말한다.
5. “1388 청소년지원단”이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고 위험에 노출된 청소년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CYS-Net)에 참여한 민간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
6.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을 규제하거나 그에 대한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

한하는 것을 말한다.

7.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이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8. “학교지원단”이란 각급 학교와의 협조관계 형성을 통하여 학교 부적응, 학업중단 징후 청소년을 조기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관내 각급 학교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 제2장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 운영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상담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
2.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
5.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CYS-Net)의 구축 · 운영
6.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7.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과 교육,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긴급구조, 자활, 재활, 법률 및 의료 등의 서비스 제공
8. 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인 · 집단 · 전화 · 사이버 상담 및 각종 심리검사 실시
9.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 자료수집 및 제공
10. 청소년 활동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
11.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활동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12.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조직 및 구성)** ① 센터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관리업무 수행직원 및 실무업무 수행직원을 둔다.

- ② 센터의 설치 · 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4항 별표1 및 별표2에 따른다.
- ③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영 제14조제4항 별표2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자격기준에 따라 직원을 공개채용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직을 변경하거나 센터장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④ 센터장은 전문성 향상 및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상근하여야 하며, 다른 기관의 업무를 같이 수행할 수 없다.
- ⑤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 ⑥ 군수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활용으로 인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5조(공인의 비치)** ① 센터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장의 직인을 비치 · 사용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 제6조(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청소년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운영 평가를 실시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7조(수수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이용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실비(이하 “수수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업무를 센터 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2. 교육 및 연수 등 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위기청소년과 그 가족

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과 그 가족

3. 그 밖에 위 각 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별표1의 범위에서 군수가 승인한 금액이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수료 등의 징수업무를 위임받은 센터는 그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업무 처리를 위한 사무처리지침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받은 경우

2.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협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

3. 관련 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의 현저한 부진 등 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소년에 관한 업무 소관 부서의 통합 등 달성군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정당한 처분이나 시정조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9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 제3장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제10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 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달성군,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

지원체계” 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포함한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체계가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 등은 영 제4조를 따른다.

**제11조(운영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2.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
5.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실행위원회 설치 등)** ① 운영위원회의 협의사항을 실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통합지원체계 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의 위기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 등의 조사 및 발굴
2. 위기청소년 성별 사례의 발굴·평가 및 판정
3. 위기청소년의 성별 특성에 따른 연계방안 모색
4. 통합지원체계의 유용성 평가
5. 그 밖에 실행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협의

## 제4장 보칙

**제13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운영요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취득한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그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재무회계 규칙」,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16조(적용범위)**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

## 수수료 등 기준 금액

구분	세부항목	기준금액	비 고
심리검사	MMPI, MBTI 등	실비	
교육 및 프로그램	시간당	5,000원	

※ 심리검사의 실비라 함은 심리검사지 비용 및 채점시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참고 1

### 상위 및 관계법령(발췌)

#### □ 청소년 기본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법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
2.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 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돋는 것을 말한다.
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17.1.1.] [대통령령 제27751호, 2016.12.30., 타법개정]여성가족부(청소년정책과)

제2조(청소년단체의 범위)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법 제3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또는 청소년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단체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복지”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복지를 말한다.
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4.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 ② 운영위원회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위촉 및 회의 절차 등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특별지원의 신청 및 선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기청소년을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중 보호자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은 해당 청소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2.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5. 지방자치단체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②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와 지원 내용 및 기간을 결정하여야 한다.

③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긴급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2항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9조(교육적 선도의 실시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청소년 본인,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청소년이 취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의 신청에 따라 교육적 선도(이하 “선도”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학교의 장이 선도를 신청하는 때에는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비행·일탈을 저지른 청소년
2. 일상생활에 적응하지 못하여 가정 또는 학교 외부의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

② 선도는 해당 청소년이 정상적인 가정·학교·사회 생활에 복귀하는 데에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한다.

③ 선도의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선도의 결과를 검토하여 선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본인의 동의를 받아 6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 ④ 선도 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

[시행 2017.6.21.] [대통령령 제28108호, 2017.6.13.,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제14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청소년상담복지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복지지원
  2. 상담·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5. 청소년 폭력·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 보호 지원
  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自活) 및 재활(再活) 지원
  7. 그 밖에 청소년상담 및 복지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 ② 시·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두며, 일시보호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생활지도를 하는 직원을 둔다.

③ 시·군·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④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4. “청소년복지”란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

5. “청소년보호”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유해한 물질·물건·장소·행위 등 각종 청소년 유해 환경을 규제하거나 청소년의 접촉 또는 접근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7. “청소년지도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나. 제22조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8.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2017.3.21.] [법률 제14706호, 2017.3.21., 일부개정] 여성가족부(학교밖청소년지원과) 02-2100-63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학교 밖 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

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제적·퇴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청소년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 2017.6.21.] [법률 제14447호, 2016.12.20., 일부개정]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5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구역의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복지 및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등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통합지원체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 통합지원체계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위기청소년 특별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기청소년에게 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지원(이하 “특별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특별지원은 생활지원, 학업지원, 의료지원, 직업훈련지원, 청소년활동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서비스의 형태로 제공한다. 다만,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금전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

③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기준, 범위 및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초·중등교육법

[시행 2017.6.22.] [법률 제14603호, 2017.3.21., 일부개정]교육부(학교정책과) 044-203-6449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14조(취학 의무의 면제 등) ① 질병·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에 따른 취학 의무를 면제하거나 유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면제받거나 유예받은 사람이 다시 취학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습능력을 평가한 후 학년을 정하여 취학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학생의 징계) ①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지도할 수 있다. 다만,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은 퇴학시킬 수 없다.

② 학교의 장은 학생을 징계하려면 그 학생이나 보호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15.9.30.] [대구광역시달성군조례 제2354호, 2015.9.30., 일부개정]달성군 (사회복지과)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달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2. “대구광역시 달성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기 위하여 위촉된 위원을 말한다.

